



사 단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5.1)
2.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상기 근거와 같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규정(제36조의2 신설)
- 이송처치료 현실화(별표3)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별표 15 및 별표 17)
  - 주 1회 이상 구급차등 소독
  -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등 내 이송처치료 금액을 나타내는 표 부착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 내 택시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부칙(제3조)상 경과조치 규정)
- ※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구급차는 설치대상에서 제외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붙임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기획정책실)'→공지사항에서 Download 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병 원 협 회 장



수신처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차장 강대경 부장 방성민 사무총장 서석완 상근부회장 이계용

시행 : 기획정책 제 2014-137 ( 2014.05.19 )

우 121-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15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지 : www.kha.or.kr

전화 02-705-9214 전송 02-705-9219 ( 대표FAX : 02-705-9209 ) E-mail : kdk@kha.or.kr